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487
-----------	-----

2019년 4월 24일
교 육 위 원 회

I .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3월 22일, 김용연 의원
2. 회부일자 : 2019년 3월 26일
3. 상정일자 : 제28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19년 4월 24일 상정·수정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용연 의원)

1. 제안이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함.
- 이때, 기부채납의 합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신축하여 공공건물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건축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관리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물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기부채납에 의해 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대상 포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 따라서 교육청 및 교육감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 받아 사용·관리하는 건축물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증 대상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촉진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적용 범위에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서울시교육청 건축물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기부채납에 의한 건축물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 및 제2호)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9년 3월 22일 김용연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487호로 발의되어 2019년 3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건축물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기부채납을 통해 신설하는 건축물의 경우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조례안의 취지에 대한 검토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Barrier Free, 이하 ‘인증’)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공공시설물을 평가하여 인증을 해주는 것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1)에 따른 시설 및 동 조례 제3조 각호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의 신축은 인증 취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현행 법령과 조례에는 인증대상 “신축 건축물”에 기부채납으로 신설된 공공건축물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동 개정조례안은 기부채납으로 신설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 등 시설이용 약자의 시설이용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조문에 대한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인증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동 조례 제3조 1호 및 2호의 규정 중 인증대상의 요건인 ‘신설’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1)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이 조, 제10조의5,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에서 "보건복지부장관등"이라 한다)은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상시설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등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동 개정조례안의 기부채납이 인증대상의 요건인 ‘신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법제처는 상위법률인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축’의 범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신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기부채납³⁾하는 경우까지로 넓게 해석해야 된다는 법령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⁴⁾.
- 따라서 동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설’에는 이미 기부채납으로 신설된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데 있어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안 제3조제2호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기부채납으로 신설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립학교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 따른 기부채납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안 제3조제2호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3조제2호와 관련하여 신설하는 사립학교 중에 교육청으로부터 재정지원과 기부채납을 동시에 받는 경우는 현재까지 없으며, 또한 기부채납이 없더라도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학교는 인증의 대상이므로 현행 조례를 유지할 것을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법제처 18-0425.(2018-10-19)

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교육시설안전과-3398.,2019.4.9.)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수정안의 요지 :

- 사립학교는 기부채납의 수혜자가 될 수 없으므로 안 제3조제2호의 괄호를 삭제함.

VII.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87
----------	-----------

제안연월일 : 2019년 4월 24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은 서울시교육청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서울시교육청에 이전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립학교는 기부채납의 수혜자가 될 수 없는바, 안 제3조제2호를 삭제함으로써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함.

2. 주요내용

- 안 제3조제2호 중 괄호를 삭제함(안 제3조제2호).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호 중 괄호를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p> <p>1.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물 중 <u>신설·이설</u>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p> <p>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u>신설·이설</u>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p> <p>3. (생략)</p>	<p>제3조(적용범위) (생략)</p> <p>1. ----- ---- <u>신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u>·이설 ----- -----.</p> <p>2. ----- ----- ----- ----- <u>신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u>·이설 -----</p> <p>3. (현행과 같음)</p>	<p>제3조(적용범위) (생략)</p> <p>1. (개정안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신설·이설”을 “신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p> <p>1.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물 중 <u>신설·이설</u> 및 전면 개축하는 공공건축물</p> <p>2. ~ 3. (생략)</p>	<p>제3조(적용범위) ----- -----.</p> <p>1. ----- <u>신설</u> (<u>「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u>)·<u>이설</u> -----</p> <p>2. ~ 3. (현행과 같음)</p>